

추가약정서(전자채권담보대출용)

1. 주요 개정 내용

| 현 행 | 개 정 | 비고 |
|---|---|---|
| <p>추가약정서 (전자채권담보대출용)</p> <p>제1조 (개별대출의 신청 및 실행) ~ 제6조 (기한이익의 상실) (기재생략)</p> <p>(신설)</p> <p>제7조 (정보제공의 동의) (기재생략)</p> <p>제8조 (약관적용의 우선순위) (기재생략)</p> <p>제 9조 (기타 특약사항) (기재생략)</p> | <p>추가약정서 (전자채권담보대출용)</p> <p>제1조 (개별대출의 신청 및 실행) ~ 제6조 (기한이익의 상실)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7조 (지연이자 수취)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경우 「대·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(이하 “상생협력법”)」과 「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(이하 “하도급법”)」에 따라 구매기업으로부터 지연이자 (할인료 또는 대출이자)를 받을 수 있습니다. ① 구매기업이 「상생협력법」 상 납품대금을 물품 등을 받은 날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, 구매기업이 물품 등을 수령한 후 60일을 초과한 날로부터 전자채권 담보대출 만기일까지의 대출이자 ② 구매기업이 「하도급법」 상 목적물 등을 수령한 날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, 구매기업이 목적물 등을 수령한 후 60일을 초과한 날로부터 전자채권 담보대출 만기일까지의 대출이자</p> <p>제8조 (정보제공의 동의)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9조 (약관적용의 우선순위)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10조 (기타 특약사항) (현행과 같음)</p> | <p>금감원 요청에 따른 「상생협력법」, 「하도급법」 안내 문구 판매 기업 약관 기재</p> <p>체하</p> <p>체하</p> <p>체하</p> |

2. 개정시행일: 2018년 12월 31일

3. 기존 가입 고객에 대한 개정 약관 적용 여부: 적용